

입법평가연구 제17호 2020년 7월 pp. 133~16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평가

- 이른바 “리쇼어링(유턴) 지원법”을 중심으로 -

맹수석*

Contents

- I . 머리말
 - II . 리쇼어링 요인과 각국의 현황
 - III . 리쇼어링 지원법의 주요 내용
 - IV . 리쇼어링 지원법의 개선 방안
 - V . 맺음말
-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 머리말

리쇼어링(reshoring)이란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본국의 규제완화와 세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고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¹⁾ 종래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에 비해 저렴한 인건비나 판매시장 확보 등을 이유로 다른 나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성행하였으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EU, 일본 등을 중심으로 리쇼어링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3. 8.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리쇼어링 지원법”이라 한다)이 법률 제12010호로 제정·공포되어 2013. 12. 7.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기해 2014년도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2020년 5월 현재 71개 회사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가 본래 예상했던 만큼의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최근 대통령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독려한 바 있고,²⁾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추진을 표방하고 나섰다. 또한 2019년 리쇼어링 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를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요건의 엄격성, 대상업종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 확산에 여전

1) 용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유턴’이나 ‘리쇼어링’, ‘국내복귀’ 등으로도 표현했고, 영어권에서는 reshoring 이외에 backshoring, nearshoring, onshoring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Koen De Backer et al., “Reshoring: Myth or Reality,”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Policy Papers No. 27, p.7(2016)). 그리고 리쇼어링의 개념을 제조업을 중심으로 정의하기도 한다(Ellram, L.M., “Off-Shoring, reshoring and the Manufacturing Location decision,” Journal of Supply Chain Management, Vol. 49(2), p.3(2013)).

2) “文 “한국기업 유턴 유도…과감한 전략 내놓겠다””, 매일경제, 2020.05.10.(<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5/476581/>) 외.

히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각국의 리쇼어링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현행 리쇼어링 지원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리쇼어링 요인과 각국의 현황

1. 리쇼어링 정책의 배경과 특성

(1) 리쇼어링의 이유

리쇼어링은 해외사업의 축소나 철수, 제3국으로의 이전이 아니라 해외사업을 본국으로 복귀시키는 방식을 말하는데,³⁾ 리쇼어링을 하는 이유는 오프쇼어링(해외진출)의 경우와 같이 다양하다. 국내 기업들의 오프쇼어링은 국내시장에 비해 낮은 인건비, 원자재수급의 원활, 새로운 시장개척의 필요성, 제품의 품질이나 생산성, 무역마찰의 회피, 관세나 조세회피, 외환리스크 회피, 정부의 무역정책 등 다양한 이유에서 이루어진다.⁴⁾

그런데 리쇼어링은 해외 생산현장의 임금 인상 등으로 오프쇼어링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는 물론 무역분쟁 격화 등의 환경 변화에 의해 일어나기도 한다. 예컨대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은 운송비용이나 원재료 조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본국에서 하는 편이 경제적일 때 생산거점을 본국으로 다시 복귀시킨다는 이론이다.⁵⁾ 이와 같이 리쇼어링은

3) Wiersum, M., "Chinese exports will face more competition from Japan and Korea, Market Realist," Market Realist(Aug 28, 2013)(<https://marketrealist.com/2013/08/chinese-exports-will-face-competition-japan-korea/>).

4) Casson, M., "Internalization theory and reshoring: An economic perspective," Journal of Supply Chain Management, Vol.49(2), pp.8-13(2013); Ellram, L. M., W. L. Tate and K. J. Petersen, "Offshoring and Reshoring: An Update on the Manufacturing Location Decision," Journal of Supply Chain Management, Vol.49(2), pp.14-22(2013).

5) Koen De Backer et al., op. cit., p.9.

해외진출국가의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 등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라 한다)의 혁신적 발달에 의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첨단기법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됨으로써 리쇼어링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즉, 생산현장에서 ICT를 활용한 제조업의 자동화가 확산되면 제품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낮아지고, 로봇의 활용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떨어져⁶⁾ 생산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⁷⁾ 이러한 요인에 의해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의 국내 복귀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⁸⁾

그런데 최근에는 경제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의 생산라인 보호 등 전략적인 측면에서 리쇼어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AI 등의 활용에 따라 자동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부품·소재의 운송비나 시간 요소 등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⁹⁾ 특히 제품의 개발이나 조립은 부품·소재가 구비되면 어디에서나 가능하지만,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이하 “GVC”라 한다)이 부실하면 부품·소재 조달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재고물량을 확보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비용상승의 요인이 되어 수요에 연동하는 유연한 대응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경영자가 생산거점의 입지에 있어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인건비나 환율변동 등 부차적 요인 아니라, 최종 수요의 규모와 성장성 및 부품의 소재지 등이 될 것이다.¹⁰⁾

6) Fine, C., “Intelli-sourcing to replace off-shoring as supply chain transparency increases,” Journal of Supply Chain Management, Vol.49(2), pp.6-7(2013).

7) Allan Lyall, Pierre Mercier and Stefan Gstettner, “The Death of Supply Chain Management,” Harvard Business Review, June 15, 2018(<https://hbr.org/2018/06/the-death-of-supply-chain-management>).

8) 남수중·방만기, “리쇼어링(Reshoring)의 주요 국가 사례와 결정요인 분석-4차 산업혁명이후 기술혁신의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26권 제1호(2019), 159면.

9) 일본의 경우 제조업과 엔저 현상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近藤浩正・内山由紀子, “円安に伴うリショアリング(製造業の国内回帰)の可能性(前編)”, 「日経研月報」 2015. 8, 2면; 川戸瞭, “縫製業のリショアリングとその影響”, 「大和総研 アジアンインサイト」, 2018. 7, 1면 이하).

10) 菊地秀朗, “製造業の「国内回帰」に過度な期待は禁物”, 「Research Focus」(日本総研), No.2017-034 (2018), 6면.

특히 코로나-19(COVID-19)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GVC의 붕괴 위험을 경험하면서, 전염병의 대유행(pandemic) 등의 대형재난이 생기게 되면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던 국내 생산시스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완성품 중심의 국내 대기업들이 인건비 등 해외 진출 요인보다는 안정적인 부품·소재를 확보하기 위해 생산거점을 국내로 복귀시킬 유인과 편익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¹¹⁾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선언 이후 관련 산업분야의 GVC 붕괴 등으로 기업들이 고충을 겪고 있고, 아울러 전염병의 대유행 위험에 대비하여 비대면 기업활동이 급증하고 있다.¹²⁾ 우리나라는 ICT 등을 활용한 우수한 방역 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으로 팬데믹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국내 제반 환경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의욕을 고취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점에서 정책추진의 근간이 되는 리쇼어링 지원법의 개정 등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2) 리쇼어링 정책의 한계와 방향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과거 노동집약형 제조업들이 고임금 체제로 인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저개발국에 비해 비용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로봇 활용의 증가와 디지털화 등 기술혁신에 의해 노동집약형에서 자본·기술집약형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오프쇼어링의 유인이 위력을 잃고 있다. 이처럼 제조업 분야 등에서 인건비 부담에 따른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이 자동화생산라인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 등

11) 반면에 갈수록 인구감소에 의해 국내소비시장의 정체라는 구도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향후 국내복귀가 진전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인구증가와 인력수급망의 확대 정책 등의 내수확대 정책도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고부가가치상품 창출(생산혁신)이나 효율화에 의한 비용절감(공정혁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이나 마케팅 인재의 육성과 같은 인적 투자의 지원 등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菊地秀朗, 전개논문, 7면).

12)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비대면’ 확산”, KBS, 2020.05.04(<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8569&ref=D>).

으로 종래 저임금 메리트가 축소됨으로써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에서는 국내복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¹³⁾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사드사태에 따른 경제제재나 일본의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이유로 한 경제보복 등을 겪으면서, 핵심소재·부품을 특정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 그 피해가 심각해 질 수 있음을 절감한 바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해외진출기업 및 정보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고부가가치 관련 기업에 대한 별도의 유턴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그동안 국내의 고용문제 해결과 경제활성화 대책의 관점에서 제조업 중심의 리쇼어링에 대한 세제나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국제정세의 복잡화 및 팬데믹 등으로 인해 종래의 해외진출 붐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리쇼어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⁴⁾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제공과 규제 완화 등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언론, 기업, 업종단체, 지자체로부터 수도권·노동·환경규제 완화 및 법인세 인하 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근본적인 투자환경이 개선될 때 해외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므로, 유턴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쇠약의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리쇼어링 정책들이 종래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하던 다수의 기업들에 대한 차별이자 특혜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한계(noncompetitive)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이를 정부 재정으로 연명함에 따른 문제, 국내복귀로 인한 독과점적 지위의 전환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내포되어 있다.¹⁵⁾ 특히 리쇼어링 촉진정책으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주장·추진하고 있

13) ILO, "The future of work in textiles, clothing, leather and footwear," Working Paper No. 326, 2019, p.26.

14) 김덕식, "전진국 기업의 리쇼어링 아직은 탐색단계", 「LG Business Insight」 2015, 39면.

지만, 이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인 ‘공평’, ‘균형발전’ 원칙 등이 훼손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지원확대 및 규제완화 등은 단기적 측면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이고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2. 각국의 리쇼어링 현황

(1)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의류, 신발, 전자제품 등 노동집약 산업의 생산기지를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아시아권으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중국은 낮은 공장운영 비용, 저임금, 내수 시장 잠재력, 외국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인으로 인해 생산 거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우리기업들의 중국 진출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현지의 가파른 임금상승으로 인해 해외생산의 이점이 약화되고,¹⁶⁾ 오프쇼어링에 따른 지적재산권 유출 우려, 비숙련 노동자에 따른 제품 품질 하락, 공급망 관리 어려움 등의 리스크로 인해 리쇼어링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¹⁷⁾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리쇼어링 지원법의 시행 이래 세제혜택 등 다양한 ‘당근’ 정책을 펴온 결과, 법률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71개 기업에 이르렀다.¹⁸⁾

15) 전인우·문성웅, “한국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로의 U-Turn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제13권 제1호(2011), 10-11면 참조.

16) 중국으로 진출했던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중국 내의 임금이 상승하는 등 미국과 중국간 생산비용의 격차가 축소되자 복귀현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Tate, Wendy L., Lisa M. Ellram, Tobias Schoenherr and Kenneth J. Petersen, “Global Competitive Conditions Driving the Manufacturing Location Decision,” Business Horizons 57(3), pp.381-390(2014)).

17) 강수연·문제철, 「4차 산업혁명과 광주전남지역으로의 리쇼어링」, 한국은행, 2018, 4면.

18) 본래 80개 기업을 선정했으나 유턴 포기나 폐업으로 9개 기업에 대해서는 선정을 취소했다.

그리고 총 9,065억 원이 투자되었고, 2,468명의 고용이 이루어졌다. 2019년도에 선정된 유턴기업은 16개사로 2014부터 2018년도 기간 중 연평균 약 10개사(총 48개사)가 선정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최초의 대기업 리쇼어링¹⁹⁾ 및 자동차부품기업 동반유턴, 중견기업 선정건수 증가(3건) 등 양적·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²⁰⁾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정된 유턴기업의 수는 7개사(중견기업 3개사, 중소기업 4개사)이다. 이 기간 동안 수백억 원 대의 유턴투자를 준비 중인 중견기업이 나타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경영환경 속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유턴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이 꾸준히 생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저임금 국가 쪽으로 향하던 종래 해외 진출 패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턴기업 유치를 통해 국내 공급망 안정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하고,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기류도 고조되고 있다.

〈'14-'20.5월 연도별 유턴기업수〉

(단위: 백만불)

'14	'15	'16	'17	'18	'19	'20.5월	계
20	3	12	4	9	16	7	7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진출국가별 유턴기업수〉

(단위: 백만불)

중국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계
64	5	1	1	7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9) “현대모비스 ‘유턴’으로 신규 고용 창출… 실업 열쇠로 주목받는 리쇼어링”, 한국일보 2020.05.1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21679343705>).

20) 물론 다양한 리쇼어링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조대기업 중심으로 해외 투자 및 생산공장 해외 이전이 가속화 되기도 했다. 즉, 삼성전자 베트남 소비자가전 복합단지 조성 착공(2015), 기아자동차 멕시코 공장(2016), 한국타이어 미국 테네시 공장(2017), LG전자 미국 테네시주 가전제품 생산공장(2018) 등이 그 예이다(김상신, “리쇼어링 2.0」 필요: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중소기업 포커스」 제18-24호(2018. 9), 3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평가

〈기업규모별 유턴기업수〉

(단위: 백만불)

대	중견	중소	계
1	8	62	7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업종별 유턴기업수〉

(단위: 백만불)

업종	전자	주얼리	자동차	신발	기계	금속	섬유	화학	기타	계
기업수	12	13	10	7	6	6	4	4	9	7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미국

미국은 2007년 12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에 이어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의 파산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진 아래, 2008년 10월에 성립한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ARP: 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에 기해 공적자금투입에 따른 자동차업계의 구제 등 적극적인 위기대응정책을 펼쳤다. 특히 2009년 2월에는 ‘미국 국가재생·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RRA)을 제정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대책을 펼쳤다. ARRA에서는 취업세대 세액공제, 실업보험 급여기간 연장 등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이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를 강조하였다.²¹⁾ 이 과정에서 외국에 아웃소싱되고 있던 제조업 생산거점들이 미국 내로 복귀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²²⁾ 2010년 이후 약 7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2017년 기준 1,389개 기업이 국내복귀(외국인직접투자 포함)를 했는데, 중국이 59%, 독일이 18%, 일본이

21) H.R.1-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111th Congress (2009-2010)(<https://www.congress.gov/bill/111th-congress/house-bill/1/text>).

22) 2011년 8월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에 의해 발표된 “Made in America, Again: Why Manufacturing Will Return to the U.S.”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생산비용 차이의 격차가 급격히 축소됨으로써 2020년까지 30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https://www.bcg.com/documents/file84471.pdf>).

15%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특히 2018년 기준 14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세금감면, 규제완화, 해외생산비용의 증가에 대한 인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²⁴⁾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에 이어 트럼프 정부도 제조업 재생정책 내지는 제조업 중시정책을 폈고 있다.²⁵⁾ 리쇼어링 정책의 추진에 있어 인재확보 및 혁신기술을 목적으로 첨단 R&D 관련 연방정부 예산증액, 지역대학 및 산업체를 지원하는 인재개발 펀드 조성, 첨단기술분야 근로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의 추진, 복귀기업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²⁶⁾ 특히 트럼프 정부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일환으로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고 미국산 구매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있다.²⁷⁾ 그리고 로봇 활용을 통한 공장자동화의 비약적 진전 등 국내 제조비용 경쟁력이 상승함에 따라 자동차 업계를 시작으로 제네럴 일렉트릭(GE), 오토스, 애플, 구글 글라스, 슬릭오디오 등 전자기기 업계가 리쇼어링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²⁸⁾

미국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현상은 이러한 정부주도의 적극적 정책 이외에 세일가스의 공급 확대로 에너지와 에틸렌 등의 원료가격이 인하됨으로써

23) Reshoring Initiative, 2018 Data Report, 2019, p.16.

24) Reshoring Initiative, 2018 Data Report, 2019, pp.6-7.

25) 즉, 오바마 정부는 2012. 2. 22. 국내제조활동공제(Domestic Production Activities Deduction (DPAD, IRC 199))를 통해 미국에서 제조를 통해 얻은 법인소득에 대해 9%의 공제를 인정하는 등 미국 내에서 제조하는 업체들에게 세금공제혜택을 주었다(Instructions for Form 8903(<https://www.irs.gov/pub/irs-prior/8903-2013.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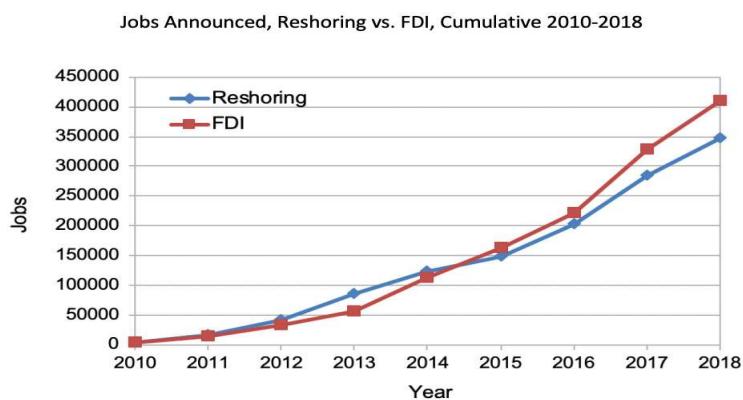
26) 미국은 2014. 7. 9. 미국 외로 아웃소싱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금지하면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미국 내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총비용의 20%를 세액공제해주되, 해당 사업자의 상근 근로자(full-time employees)의 증가를 요건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자리복귀법(Bring Jobs Home Act)을 발의하였으나(<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3/s2569>),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그리고 2017. 1. 24.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이 상원에 발의된 상태이다(H.R. 685 (115th): Bring Jobs Home Act)(<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5/hr685> 참조).

27) 트럼프 정부는 2017년 감세·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에서 DPAD를 폐지하면서 종래 최고 35%의 누진세율을 2018. 1. 1.부터 일률적으로 21%로 인하하는 등의 감세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외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KPMG, “Global dimension to the us tax cuts,” KPMG Advisory, 2018, p.1(<https://advisory.kpmg.us/content/dam/advisory/en/pdfs/>)).

28) 강수연·문제철, 앞의 자료, 8-9면.

미국 내 생산비용이 낮아진 점, 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비용의 증가나 중국 등 신흥국의 인건비의 급등으로 해외 생산비용이 상승한 점, 제품사이클의 단기화를 통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내생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²⁹⁾

그러나 GE³⁰⁾나 캐터필러(Caterpillar) 등 리쇼어링한 기업이 미국 내에서 고용하는 노동자에 대해 종래보다 낮은 임금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주로 중국으로부터의 회귀로 한정되는 등 국지적인 점, 북미 시장에의 판매를 전제로 한 제품 제조에 한정되는 점³¹⁾ 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고,³²⁾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견해도 있다.³³⁾



29) 内閣府, 「経済財政白書, 世界経済の潮流等」, 2013, 217면.

30) GE는 온탕기,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 공장을 중국 및 멕시코에서 켄터키 주에 위치한 이플라이언스 파크로 이전하고, 제조과정 전반에 IoT,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혁신적 제품 개발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31) 즉 미국 시장의 고객과의 근접성을 높여 고객 니즈나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례가 대부분일 뿐, 미국을 수출 거점으로 하지 않고 있어 리쇼어링이 미국 고용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정밀도가 높고 노동자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분야와 장기적으로 수송비용이 증가하게 될 분야 등에 한정된다는 견해도 있다.

32) 松村博行, “造業再興を目指す米国の試み”, 「立命館国際地域研究」 第37号(2013), 48면.

33) Duhigg C. and Bradsher K., "How the U.S. Lost Out on iPhone Work," New York Times, January 21, 2012.

International Region From, Reshoring, 2010-2018					
Rank	Region	Jobs	Companies	Jobs/Company	% of total jobs reporting
1	Asia	77,976	856	91	72
2	North America	23,061	149	155	21
3	Western Europe	4,863	73	67	4
4	Eastern Europe	1,134	8	140	1
5	Middle East	624	5	116	1
6	South/Central America				
	America	513	8	63	<1
7	Africa	70	5	13	<1
8	Australia/Oceania	0	5	0	<1

자료: Reshoring Initiative

(3) 일본

아베(安倍) 내각은 장기간의 경기불황을 탈피하고 엔고로 약화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013年 日本再興戦略」 차원에서 리쇼어링 유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³⁴⁾ 일본의 리쇼어링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특색에 맞는 기업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규제철폐, 범인세 인하, 경제특구제 도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³⁵⁾

일본의 리쇼어링 현황을 보면 2012년 510개, 2015년 724개, 2016년 834개, 2017년 774개 기업이 복귀하는 등 자국 유턴이 점증하고 있다. 해외생산 기업 중 약 13%가 국내로 생산거점을 되돌릴 의향이 있는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다.³⁶⁾ 복귀기업 가운데 생산거점을 중국·홍콩에 두었던 기업이 전체의 2/3가까이 되는데, 복귀 이유는 인건비, 품질관리상의 문제 등이고, 국내 입지 환경 요인으로서는 공장 노동자의 확보, 고도기술자 및 숙련 기능자의 확보 등 인재 확보가 개선을 바라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³⁷⁾

34) 経済産業省, 「通商白書2015」 참조(<https://www.meti.go.jp/report/tsuhaku2015/2015honbun/index.html>).

35)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비교우위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장설비 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재정지원 (이비태현, 효고현, 미에현, 가나가와현 등), 행정절차 대행(이와테현 등), 인재육성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강수연·문제철, 앞의 자료, 14면).

36) 内閣府, 「経済財政白書, 世界経済の潮流等」, 2013, 65면.

37) 経済産業省·厚生労働省·文部科学省, 「2018年版ものづくり白書(概要)」, 2018, 5, 7면.

특히 최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로 제조업의 공급망(supply-chain)이 끊어져 경제구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생산거점이 집중되었던 중국 등에서 일본으로 복귀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³⁸⁾ 즉, 긴급경제대책 예산 총 117조 엔 가운데 2,200억 엔의 보조금을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금년도 보정예산안에 포함시켰다.³⁹⁾ 이 예산은 특정 국가에 대한 생산의존도가 높은 제품·소재 또는 국민의 건강 생활 영위에 있어서 중요한 제품·소재에 대해 국내에 공장을 신설 또는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조금은 해당 생산거점 등의 이전을 위한 건물, 설비의 도입 등과 관련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재원이다.

국내 생산거점을 확대하여 제품 등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공급망의 붕괴 리스크 저감, 국내 제조업 등의 차질 없는 가동, 강력한 경제구조의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⁴⁰⁾ 보조율은 중소기업은 3분의 2, 대기업은 2분의 1로 하되, 마스크나 소독약, 방호복, 인공호흡기, 인공폐 등 국민의 건강생활 영위에 중요한 제품 등의 국내생산거점 정비 등의 경우에는 이를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은 4분의 3, 대기업은 3분의 2로 보조율을 높이고 있다.⁴¹⁾

(4) 각국의 특성 검토

리쇼어링 지원법의 제정을 통해 리쇼어링 개념 등을 명확하게 정의한 상태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⁴²⁾ 미

38) 内閣府,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緊急経済対策」について, 2020. 4. 7, 31면(<https://www.cao.go.jp/>).

39) “供給網の国内回帰を支援グローバル展開の深化も課題”, 日本経済新聞 2020. 5. 3(<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8765520S0A500C2SHA000/>).

40) 経済産業省, 「令和2年度補正予算の事業概要(PR資料)」, 2020. 4. 24면(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2020/20200407_taisaku.pdf).

41) 위기대응업무에 의한 기업지원규모는 총 7조 엔 규모인데, 정부가 日本政策金融公庫에 재정용 자 등의 형태로대출하면 이를 指定金融機関(日本政策投資銀行·商工中)이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2조 엔), 중견·대기업(5조 엔)의 자금조달 또는 생산거점의 국내회귀를 포함한 공급망 재편을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經濟産業省, 「財政投融資関連(企業の資金繰り支援」 참조)(https://www.meti.go.jp/main/yosan/yosan_fy2020/hosei/pdf/hosei_zaito.pdf).

42) 그럼에도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미·일 등의 리쇼어링 제도에 긍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美·日처럼 ‘리쇼어링’ 한다고? 한국은 ‘노(NO)답””, 서울경제, 2020.05.01.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KZ2UZVI>) 외).

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 민간 컨설팅사, 비영리기구 등에서 리쇼어링의 단순 통계·조사 목적으로 정의한 개념이 혼재하며, 리쇼어링 인정 여부와 정부 지원이 원활히 연계되지 않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가 35%에서 21%로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도 유턴기업 정책이 아닌 자국 투자환경 개선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일본도 법인세 인하 및 수도권 규제 철폐 등 근본적인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유턴을 유도하고 있으며, 별도·단일의 리쇼어링 법률·정책은 없다. 다만, 코로나-19 대책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이 2020. 4. 7. 발표되었으나, 구체적 사항은 아직 공고되지 않은 상태이다. 독일의 경우 인더스트리 4.0정책과 연계한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등은 일반적인 기업환경 개선정책이지, 별도의 유턴정책은 아니다.⁴³⁾

III. 리쇼어링 지원법의 주요 내용

1. 리쇼어링 지원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1) 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확대 및 해외 현지 경영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복귀를 위한 해외 현지 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절차가 복잡하고, 국내복귀 시 국내법에 따른 관세의 부과 및 국내사업장 입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3. 8. 6. 리쇼어링 지원법을 제정하고, 12. 7.부터 시행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등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하여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 및 정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43) 그리고 조세지원책으로 최고 법인세율을 25%에서 15%로 10%p 인하하여 실질과세율을 29.8%로 낮추고,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간 1:1 협상을 통해 맞춤형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정도이다.

(2) 주요내용

리쇼어링 지원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자신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이 소유한 해외 사업장을 통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해외진출기업으로 정의하고(동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를 국내복귀기업으로 정의하였다(동법 제2조 제4호).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리쇼어링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책무를 부여하면서(동법 제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내복귀기업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동법 제5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 받으려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국내 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를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동법 제7조). 그리고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국내복귀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선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엄격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동법 제8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 토지매입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지원 등 자금지원, 산업단지의 우선적 공급 등 국내 사업장 입지지원,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및 고용보조금 지급,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동법 제11조~제15조).⁴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동종·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으

44)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신청 당시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조세감면이나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 습득한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동법 제19조~제21조).

로, 국내에 신설 또는 증설되는 사업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으면서 동반하여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공동시설의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었다(동법 제16조).

2. 개정 리쇼어링 지원법의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제정 당시 리쇼어링 지원법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을 제조업에 한정하고 있는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9. 12. 10. 리쇼어링 지원법을 개정하여 해외진출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공장의 매입·임대비용 지원 및 국유·공유재산의 사용 특례를 마련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20. 3. 11.부터 시행하였다.

(2) 주요내용

해외진출기업의 인정 요건에 제조업과 함께 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추가하였다(동법 제2조 제1호 나목).⁴⁵⁾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다(동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 신설). 그리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동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토지임대비용, 공장의 매입·임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동법 제12조 제2항), 국내복귀기업에 대

45) 특히 2019년 개정 시에는 2013년 제정된 리쇼어링 지원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해외진출기업”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그 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여 국유·공유 재산 등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용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동법 제13조의2~제13조의5 신설). 그리고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가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동법 제17조 제4항 신설).

(3) 개정 법률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내용

1) 2019년도 개정 리쇼어링 지원법에 기해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① 임대·매각 수의계약, 50년 장기임대, 임대료 산정 및 감면 특례 도입으로 입지선정 부담을 경감시켰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동시 개정).⁴⁶⁾ ② 종전 토지 매입비용과 설비투자비용만 지원 가능하던 것을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설비투자비용’ 지원으로 확대하였다. ③ 2019년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대기업도 법인세 및 관세 감면대상으로 확대하였고, 2019년도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상 해외복귀기업의 법인세 감면분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과세하는 규정을 비과세로 전환하였다. ④ 2020년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종래 국내사업장 신설·창업에만 적용하던 것을 ‘증설’하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⁷⁾ ⑤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50%에서 25%로 완화하면서, 동일제품의 기준을 세분류 4단위에서 소분류 3단위로 완화하였다.

2) 제도운영체계도 강화했는데, ① 각종 지원제도 신청창구(고용보조금-고용부, 조세감면-국세청 등) 일원화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고, ②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근거(시행령—법), 위원장(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장관) 및 위원(각부처 고위공무원단→차관) 직위 상향 및 민간위원 선임근거 등을 신설하였다.

3) 이 밖에 비법률 개정사항에 있어서 ① 2018년에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고, 대기업에 대한 입자설비보조금 및 스마트공장 지원을

4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기한 [별표]에 이를 추가하였다 ([별표] 제222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장기사용허가등 및 사용료등의 감면).

47) 2020. 3. 23.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면서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입법평가연구(Journal of Legislative Evaluation) 제17호

확대하였다. ② 2020년에는 스마트공장 지원 추가 확대 및 외국 사업장 인력의 고용허가제(E-9) 지정알선 허용, 산업부 R&D 참여우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⁴⁸⁾

〈2018년 11월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요약〉

	항목	내용	진행상황																						
❶ 대상 확대	업종확대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추가	유턴법 시행('20.3.11)																						
	생산제품 범위 확대	세분류(4단위) → 소분류(3단위)로 동일성기준 완화	유턴법 시행령 개정 완료('19.8.13)																						
	축소요건 완화	해외사업장 50% → 25% 이상 축소로 완화	유턴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19.8.19)																						
❷ 인센티브 강화	입지·설비 보조금	· 지원요건 완화(상시고용 30인 → 20인) · 타당성평가 기준 보완 · 지급대상 확대(중소·중견 → 대기업)	보조금 고시 개정 완료('19.4.12)																						
	고용 보조금	지원기간 확대 (1년→2년)	고용창출장려보조금 개정 완료('19.1.1)																						
❸ 지원체계 간소화	세제 감면	법인세, 관세 감면 대상에 대기업 포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h colspan="2"></th> <th colspan="2">대기업</th> <th colspan="2">중소중견기업</th> </tr> <tr> <th colspan="2"></th> <th>청산양도</th> <th>축소</th> <th>청산양도</th> <th>축소</th> </tr> <tr> <th>법인세</th> <td>0</td> <td>x→0</td> <td>0</td> <td>0</td> </tr> <tr> <th>관세</th> <td>x→0</td> <td>x→0</td> <td>0</td> <td>0</td> </tr> </table>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청산양도	축소	청산양도	축소	법인세	0	x→0	0	0	관세	x→0	x→0	0	0	조특법 개정 완료('18.12.24)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청산양도	축소	청산양도	축소																				
법인세	0	x→0	0	0																					
관세	x→0	x→0	0	0																					
농어촌특별세(조세감면액의 20%)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19.2.12)																								
❹ 지원체계 간소화	입지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 등	유턴법 시행('20.3.11)																						
	정책사업 우대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우선 지원 등	중기부·금융위 등에서 시행 중('19.1.1~)																						
❺ 지원체계 간소화	절차 간소화	각 지원제도 신청·심사 간소화(원스톱서비스)	유턴법 시행('20.3.11)																						
	신청기한 간소화	보조금 신청 기한 간소화(3개 폐지, 3개 연장)	유턴법 시행규칙 시행('20.3.1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48) 산업통상자원부·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가이드북), 2020, 14면 이하 참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평가

〈2020년 2월 코로나19 수출지원대책 상 유턴지원 개편사항〉

구분	내용
법인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사업장 종설 유턴기업에 법인세 감면 신설 → 감면한도 등 조특법 개정('20. 4월 시행, 기재부)
스마트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턴기업을 우선지원하고, 지원수준*을 확대 * 신규구축 : 최대 1억원 → 1.5억원 / 고도화 : 최대 1.5억원 → 2억원 ('20.3월 시행, 중기부)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조원 규모 중소·중견 유턴기업 등 대상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 (설비투자 봄업 프로그램, 금융위) 유턴 수출기업 특별보증(소재·부품·장비 유턴기업, 무보)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국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E-9 지정 알선 예외적 허용 (금년부터 既시행, 고용부)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 배후단지에 유턴기업 입주 허용(항만법령 일부개정, '20.上~, 해수부)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기술 R&D 사업 참여 유턴기업 우대지원 (가점부여, '20.5.11일 시행, 산업부)
협력형 유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망 관점에서 수요기업과 연계한 협력형 유턴 모델 신설 및 지원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사업장 청산컨설팅 경비지원 상향(최대 1만불 → 2만불, KOTRA)
국내제도 이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한 화학안정제도 이행을 위한 밀착형 컨설팅, 융자금(환경개선자금 620억원) 우선 지원(환경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IV. 리쇼어링 지원법의 개선 방안

1. 적용대상기업 요건 규정의 검토

(1) 현행 규정

리쇼어링 지원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해외진출기업”의 요건 가운데 하나로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⁴⁹⁾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산업⁵⁰⁾을 하고 있을 것을 요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종래 관련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2019년 개정 시 해외진출기업에 제조업 외에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을 새로이 추가한 것이다.

“사업장”이란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산업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을 하는 물리적 공간을 요하게 된다.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⁵¹⁾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물론 해외진출기업이 조세 등 리쇼어링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는 대신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 신설 및 증설만 허용할

49)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이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합산하여 다른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중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기업의 대표인 경우, ②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인 경우, ③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④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주요 주주와 계약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동시행령 제2조).

50)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

5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필요도 있다. 또한 리쇼어링 후 복귀기업이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던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요함으로써 실질적인 생산활동을 통한 리쇼어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검토

첫째, 해외진출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하고 있을 것을 요하고 있는데(동법 제2조 제1호), 실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해외진출기업을 유턴 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여전히 요건이 엄격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①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다 하더라도 기업의 실체나 영업실적 등이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외진출 직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유턴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2년을 도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막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② ‘계속’ 요건도 증명의 복잡성 등의 문제가 있고, 일정 기간 휴업을 한 기업의 경우 등 ‘계속’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도 있다. ③ 업종에 대해서도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산업으로 엄격히 국한하고 있는데, 이들 산업의 교차 내지는 관련 업종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즉, 해외진출기업의 광범위한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리쇼어링을 희망하는 해외진출기업의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출액의 증빙으로 갈음하는 방식 등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⁵²⁾

둘째, 사업장 요건에 있어서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산업사업 3종류와 관련하여 필요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동법 제2조 제2호), 3종류 이외에 관련 사업분야에 대해서도 사업장 요건을 갖추고

52) 현행 리쇼어링 지원법이 선정요건의 엄격성, 대상업종의 제한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210065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여기구의원 등 14인)이 제21대 국회에 제안된 상태이다(안 제2조 제1호). 이 밖에도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및 자금지원 특례 규정의 신설 등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2020. 6. 18. 현재 제안된 6개의 개정안 가운데 이 개정안이 가장 폭넓은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국회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12Z0L0K6W1P8E1O3JB9K3L4C4V018 참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활동 이외에도 생산을 위한 연구(R&D)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연구시설 및 연구활동도 포함시켜 생산과 연구의 연계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리쇼어링 지원법상 국내복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외 현지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⁵³⁾하여야 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 또는 증설할 것을 요한다(동법 제2조 제3호). 그러나 현지 여건상 현지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절차가 복잡한 경우에는 국내복귀가 자연될 수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경영상 필요⁵⁴⁾ 또는 재정적 여력 등의 측면에서 굳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않고도 국내복귀를 희망할 수도 있다. 또한 해외사업장에서 얻은 노하우 등을 토대로 종래의 제품 등과 전혀 다른 제품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만이 아니라 R&D와 같은 ‘연구’의 경우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종래 해외로부터 조달하던 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이른바 ‘아웃소싱’의 감축도 국내복귀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등⁵⁵⁾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 등의 원활한 국내복귀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할 것을 요하는데,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이 새로운 산업분야 진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동일성 또는 유사성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⁵⁶⁾

53) 현행 리쇼어링 지원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생산량 축소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21000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이 제21대 국회에 제안된 상태이다(안 제7조 제1항 제2호)(국회 홈페이지 http://likr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Z0K0B6EOS4J1D1A2N4H2M6S1R8F2 참조).

54) 해외진출국가가 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세금 우대조치를 취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확보의 측면에서 생산거점의 유지 필요성이 있게 될 것이다.

55) 미국은 애플이 대만의 폭스콘에 위탁생산(아웃소싱)하던 물량을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유턴으로 인정하고 있다(“유턴기업 인정 범위 확대해야···해외 아웃소싱 감축도 인정해달라”, 한국경제, 2019.11.0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0308071>)).

56) 현행 리쇼어링 지원법상 국내기업의 동일성 요건 등을 완화하기 위해 [210036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4인)이 제21대 국회에 제안된 상태

2.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규정의 검토

(1) 현행 규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⁵⁷⁾ 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동법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부위원장·차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③ 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복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다(동시행령 제5조 제1항).

(2) 검토

이와 같이 종래 시행령에 있던 규정을 2019년 개정시 법률로 승격시켜 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차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범부처 리쇼어링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정부부처 위원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제외하면 민간위원의 배정인원이 2-3인 밖에 되지 않게 된다.⁵⁸⁾ 따라서

이다(안 제2조 제3호)(국회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S0D0D6A1O1U1A1C0U1I5T0U3K5N7 참조).

57) 위원회는 ① 지원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③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④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 ⑤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동법 제6조 제2항).

58) “민간 참여 적은 유턴지원위원회…탁상행정 될라”, 서울경제, 2020.05.13(<https://www.sedaily.com/NewsView/1Z2QHILF16>).

각국이 코로나-19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유턴 각축전에 나선만큼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즉, 위원회의 규모를 총 15인 이내에서 총 20인 이내 등으로 확대·개정하여 민간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지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⁵⁹⁾

3.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규정의 검토

(1) 국내복귀기업의 요건의 엄격성 문제

1) 현행 규정

“국내복귀기업”이란 ①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②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4호). 따라서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장을 신설·증설했거나 국내복귀를 위해 해외사업장의 축소 등의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한다.

2) 검토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해외 현지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해외진출기업이 관련 사업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보유하면서도 유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요건도 이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59)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동법 제27조 제3항).

(2) 외국인투자기업 제외 문제

1) 현행 규정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이어야 하고, ②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축소 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퍼센트 이하⁶⁰⁾로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 등을 요한다(동법 제7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3조). 2019년 개정시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50%에서 25%로 완화하면서 동일제품의 기준을 세분류 4단위에서 소분류 3단위로 완화한 것이다.

2) 검토

그런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외국인투자기업도 포함시켜 유턴의 영역으로 포섭하고 있음에도(동법 제2조 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라고 하고 있어 과거 1회라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재정지원을 받았다면 유턴지원이 불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최근 5년 이내” 등과 같이 일정 지원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턴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60)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생산량을 파악하기 곤란하면 해당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생산량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동시행규칙 제3조 제2항).

4. 조세감면 규정의 검토

(1) 현행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법인세의 경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국내복귀를 실시하는 기업(대·중소·중견)에 대해 최대 7년간 50~100% 감면해주고 있다.⁶¹⁾ 다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①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⁶²⁾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 또는 중설한 부분을 폐쇄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04조의24 제4항).⁶³⁾

(2) 검토

‘사업활동비용’에 있어서 인건비나 에너지비 등도 과제이지만, 높은 법인세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었기 때문에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혜택을 준 것이다.⁶⁴⁾ 물론 재정 문제가 있지만, 확실한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61) 즉,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중설하는 경우에는 ①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동법 제104조의24 제2항). ②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동법 제104조의24 제3항). 그리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도 감면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

62) 기존 사업장의 중설을 포함한다.

63)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으로 한다(동시행령 제104조의21 제8항).

사업지원 서비스로 보조금·세제우대 등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리쇼어링 기업이 3년 이내 폐업할 때 감면받은 소득세·법인세·관세를 일률적으로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계기업의 문제 등도 있지만,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세금 등 정부지원 혜택 만을 노리고 유턴을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리쇼어링 기업의 사업의 폐업·폐쇄·미개시가 원자재수급의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환수 대상의 예외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유지기간을 리쇼어링 후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간 기준과 함께 리쇼어링 후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5. 자금지원 규정의 검토

(1) 현행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동법 제12조 제1항),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토지·공장의 매입·임대 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 밖에도 산업단지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동법 제13조), 수의계약으로 국유·공유재산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동법 제13조의2).

(2) 검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지원은 대출(융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재정 지원의 직접적인 효과는 현금 지급방식이 더 클 것이

64) 이는 2010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도이다(양인준·오준석, “고용을 위한 국내복귀기업의 조세문제”, 「조세학술논집」 제29권 제1호(2013), 18~19면 참조).

다.⁶⁵⁾ 따라서 국내복귀기업 가운데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민의 건강·안전산업 분야⁶⁶⁾ 등에 대해서는 생산설비투자자금 등의 용도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안 제12조의2 신설). 그리고 그동안 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주된 요인이 개도국 대비 고임금 구조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생산라인의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을 통한 리소어링 유인책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생산설비투자자금의 지원에 있어서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구축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현금지급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6.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의 검토

(1) 현행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① 동종·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이고, ② 국내에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사업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으면서, 동반하여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국내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 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1항). 이와 같이 2개 이상의 기업이 동반복귀할 경우 업종 연관 성과 사업장 인접성을 요건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5)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①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② 소재·부품 및 장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③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등의 경우 공장시설의 신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4조의2).

66) 코로나-19 등과 같은 팬데믹으로 인한 대웅 차원에서 백신개발 등 바이오산업분야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생산설비투자자금으로 긴급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 검토

그런데 ‘업종 연관성’의 구별기준에 대한 합리성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자동차제조회사가 유턴할 때 자동차부품제조사가 함께 유턴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명확히 충족하게 되겠지만, AI기업의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최근 ICT의 급속한 발전으로 자동차제조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AI 기술에 기반한 자율주행 프로그램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업종 관련성을 엄격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사업장 인접성’ 요건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ICT 등을 통해 물리적 거리의 격지성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의 인접성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동반복귀시 ‘시간적 인접성’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예컨대 1년 이내 등) 내에 동반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따라 해외로 나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기업과의 공급망을 유지·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해외에 진출했던 대기업이 회귀하면 동반진출했던 부품·소재업체들도 함께 복귀할 가능성이 크고,⁶⁷⁾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함께 상승하게 된다.⁶⁸⁾ 따라서 종래 개별 기업 또는 동반복귀의 차원에서 리쇼어링을 논의하였지만, 복귀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이른바 ‘협력형 리쇼어링’ 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기존 동반복귀는 동종·유사·연관 업종이 동반하여 인접 지역으로 사업장을 두는 경우에만 인정했지만, 공급망 관점에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계한 리쇼어링 개념을 신설함으로써 이른바 ‘협력형 리쇼어링’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별기

67) “현대모비스 ‘유턴’으로 신규 고용 창출… 실업 열쇠로 주목받는 리쇼어링”, 한국일보, 2020.05.1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21679343705?did>).

68) 대기업이 유턴할 때 함께 현지로 진출해 있던 협력사들도 동반복귀(군집형 유턴)하게 되면 투자·고용 등 과급효과가 커진다. 따라서 대기업 유턴 촉진을 위해서는 현지 생산설비 규모가 중소기업에 비해 매우 크므로, 시행규칙 상의 최소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현행 25%에서 더 낮추거나 아예 비율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업의 유턴이 아닌 공급망 관점에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계한 기업집단 개념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V. 맷음말

리쇼어링을 국가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실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임금이 낮은 해외로 나가 그곳에서만 일자리를 확대하고 생산량을 늘려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업들이 국가·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글로벌 시대에 기업의 리쇼어링을 막연한 애국심이나 정부의 압박으로만 여겨져서도 안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리쇼어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이 유턴할 유인이 존재해야 한다. 특히 해외진출기업들이 리쇼어링을 통해 얻는 이득이 있어야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러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정확대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다만, 종래 국내에 거점을 두고 생산활동을 해왔던 기업들에 비해 과다한 특혜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관련 제도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성장 등의 요소 이외에 전략적 요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국내복귀보다는 첨단·고부가가치 사업은 국내에서 추진하면서 효율성을 위해 해외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 것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GVC 재편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글로벌 무역거래 시스템상 국제분업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GVC가 미·중간 대립의 격화와 코로나-19로 급격히 붕괴되면서, 국가간 분업의 중요성 보다는 국내의 안정된 생산기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도 시급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평가

상황이다.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떨치는 상황에서 국내 기간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첨단소재·부품제조회사의 유턴과 일반 제품의 제조회사의 유턴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무역주의 하에서도 국민경제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향후 리쇼어링 지원법제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감덕식, “선진국 기업의 리쇼어링 아직은 탐색단계”, 「LG Business Insight」 2015.
- 강수연 · 문제철, 「4차 산업혁명과 광주전남지역으로의 리쇼어링」, 한국은행, 2018, 4.
- 김상신, “「리쇼어링 2.0」 필요: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중소기업 포커스」 제18-2호 (2018, 9).
- 남수중 · 방만기, “리쇼어링(Reshoring)의 주요 국가 사례와 결정요인 분석-4차 산업혁명이후 기술혁신의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2019).
- 양인준 · 오준석, “고용을 위한 국내복귀기업의 조세문제”, 「조세학술논집」 제29권 제1호(2013).
- 전인우 · 문성웅, “한국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로의 U-턴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제13권 제1호(2011).
-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가이드북), 2020.
- 久近藤浩正 · 内山由紀子, “円安に伴うリショアリング(製造業の国内回帰)の可能性(前篇)”, 「日経研月報」 2015. 8.
- 菊地秀朗, “製造業の「国内回帰」に過度な期待は禁物”, 「Research Focus」(日本総研), No.2017-034(2018).
- 松村博行, “造業再興を目指す米国の試み”, 「立命館国際地域研究」 第37号(2013).
- 川戸瞭, “縫製業のリショアリングとその影響”, 「アジアンインサイト」(大和総研), 2018. 7.
- 日本 経済産業省, 「令和2年度補正予算の事業概要(PR資料)」, 2020. 4.
- 日本 内閣府, 「経済財政白書, 世界経済の潮流等」, 2013.
- Allan Lyall, Pierre Mercier and Stefan Gstettner, “The Death of Supply Chain Management,” Harvard Business Review, June 15, 2018(<https://hbr.org/>)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평가

- 2018/06/the-death-of-supply-chain-management).
- Ancarani, Alessandro and Carmela Di Mauro, "Reshoring and Industry 4.0: How Often Do They Go Together?," IEEE Engineering Management Review, Vol.46, No.2, SECOND QUARTER, 87(2018).
- Casson, M., "Internalization theory and reshoring: An economic perspective," Journal of Supply Chain Management, Vol.49 No.2, 8(2013).
- Ellram, L. M., "Off-shoring, reshoring and the manufacturing location decision," Journal of Supply Chain Management, Vol.49 No.2, 3(2013).
- Ellram, L. M., W. L. Tate and K. J. Petersen, "Offshoring and Reshoring: An Update on the Manufacturing Location Decision," Journal of Supply Chain Management, Vol.49 No.2, 14(2013).
- Porter, M. E. and J. W. Rivkin, "Choosing the United States: In contests to attract high-value business activities, the U. S. is losing out more than it should,"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 15, 2012(<https://hbr.org/2012/03/choosing-the-united-states>).
- Tate, Wendy L., Lisa M. Ellram, Tobias Schoenherr and Kenneth J. Petersen, "Global Competitive Conditions Driving the Manufacturing Location Decision," Business Horizons Vol.57 No.3, 381(2014).
- Eurofound, Future of manufacturing in Europe Reshoring in Europe: Overview 2015–2018, RESEARCH REPORT(2019).
- ILO, "The future of work in textiles, clothing, leather and footwear," Working Paper No. 326(2019).
- Reshoring Institute, Reshoring Initiative 2018 Data Report (<https://reshoringinstitute.org>).

국문초록

코로나-19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GVC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의 원활한 조달에 차질을 경험하면서 리쇼어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리쇼어링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리쇼어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인건비 절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할 유인이 존재해야 한다. 즉, 해외진출기업들은 리쇼어링을 통해 얻게 될 이득이 있어야만 움직 이게 될 것이므로, 리쇼어링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특히 2013년 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리쇼어링 지원법”이라 한다)을 2019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기업의 선정요건의 엄격성 등으로 인해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리쇼어링 지원법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1) “해외진출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하고 있을 것을 요하는데, 2년 미만의 경우라도 해외진출기업으로 인정 할 필요가 있고, 업종도 3종류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관련 업종 등으로 완화 하여야 할 것이다. (2)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 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외사업장의 축소 없이도 국내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의 생산만이 아니라 R&D의 경우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3)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그 규모를 현행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개정할 필요가 있다.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최근 5년 이내”와 같이 지원을 받은 후 일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평가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5) 2개 이상의 리쇼어링 기업이 동반복귀하는 경우 업종 연관성과 사업장 인접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 대신에 일정한 기간 내에 동반복귀하도록 ‘시간적 인접성’을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주제어

국내복귀기업, 글로벌 공급망, 동반복귀, 전염병 대유행, 해외진출기업

Abstract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Act on Assistance to Korean Offshore Enterprises
in Repatriation

-Focused on the Legal Systems to Promote Reshoring(U-Turn)-

Maeng, Soo-seok*

As the CGV system is collapsing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and protectionism, companies have experienced problems with procuring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thus gaining more interest in reshoring. Furthermore, advanced nations and especially the US have been actively pursuing reshoring policies to create jobs and activate the economy, and Korea is no exception. But in order for reshoring policies to be successful, there must be incentives for companies that moved abroad for various reasons including saving on wages to make a u-turn back to Korea. In other words, as companies that branched overseas will move only when it would be profitable for reshoring, it is necessary to offer assorted incentives related to reshoring. Active plans to give incentives by improving systems must be pursued. In particular, despite the 2019 revision of the 'Act on Assistance to Korean Offshore Enterprises in Repatriation (hereinafter Reshoring Act)' enacted in 2013, there were limits in effectiveness due to the strict selection criteria of applicable companies, and it is now time to promptly revise the laws.

Matters that require revisions to the Reshoring Act are as follows. (1) In order for a company to be an 'offshore enterprise', it must be in the

*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manufactur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knowledge service industries' for 'two consecutive years or longer', bu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companies as offshore enterprises even if it is less than two years and the law should be relaxed to include relevant industries and not just the three industries. (2) 'Repatriation' means for an offshore enterprise to liquidate, transfer or reduce its offshore business place to newly build or expand business places that produce the same or similar products in domestic businesses as that of the products manufactured abroad. But it should also include repatriation without reducing its offshore enterprise and should also include R&D rather than limiting to production. (3)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from the current 15 people or less to 20 people or less to increase participation of private experts in the Domestic Repatriation Enterprise Support Committee. (4) In accordance to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companies that receive foreign investment support are disqualified for this, but it should only exclude companies in which a certain amount of time such as 'past five years' has passed since receiving support. (5) When two or more reshoring companies return simultaneously, conditions are set as industry association and business place proximity, but it is necessary to set 'time proximity' to promote simultaneous repatriation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i.e. 2-3 years) rather than the aforementioned conditions.

Key Words

Reshoring(U-Turn) Company, Global Value Chain, Simultaneous
Repatriation, Pandemic, Overseas Market Expansion Company's